

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 변경대비표

1. 대상 약관 :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
2. 시행 예정일 : 2024년 3월 2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변경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제 2 조 1.~3.(생략) 4. “퇴직연금계좌”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 가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 조제 9 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 조제 10 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(신설) 다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5.~10.(생략)	(좌동) 4. “퇴직연금계좌”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 가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 조제 9 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 조제 10 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<u>다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</u> 라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(좌동)	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

제 7 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1.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, 종목·품목, 수량, 가격, 수수료 등 모든 비용,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(신설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. 가. 서면 교부 나. 전화,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.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.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(신설) ② ~ ③ (생략)	제 7 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1.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, 종목·품목, 수량, 가격, 수수료 등 모든 비용,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. <u>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,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, 투자원금 및 환매 예상 금액,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</u>을 통지할 것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. 가. 서면 교부 나. 전화,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.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.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<u>바.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</u> (좌동)	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
---	--	---

제 9 조① ~ ③ (생략) (변경) ④ 제 3 항제 1 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<u>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</u> 2. <u>제 1 호 외에</u>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 17 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. <u>제 1 호 및 제 2 호 외에</u>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(제 10 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,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.) ⑤ ~ ⑦ (생략)	(좌동) ④ 제 3 항제 1 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<u>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(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</u> 2. <u>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</u> 3. <u>제1호 또는 제2호 외에</u>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7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. <u>제1호 내지 제3호 외에</u>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(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,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.) (좌동)	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

제 17 조(연금계좌세액공제) (변경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(이하 “연금계좌 납입액”이라 한다)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(총 급여 5,5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 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)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6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1. 이연퇴직소득 2.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(신설) (신설) 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	제 17 조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(이하 “연금계좌 납입액”이라 한다)의 12%[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%]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1. 이연퇴직소득 2.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가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,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이하 ‘전환금액’이라 함)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. ③ 제2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	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

(변경) 제 24 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<u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②(생략) (신설)	제 24 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<u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②(생략) <u>부칙<개정 2024. 3. 27.></u> <u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	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반영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